

오포자이 디 오브

일반공급 구비서류 안내문

▶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 안내

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		서류제출 (당첨자)
3BL - 06.10 (목)	4BL - 06.09 (수)	2021.06.12(토) ~ 06.20(일) [9:30~17:30 (9일간)]
한국부동산원 (www.applyhome.co.kr)		서류제출 장소 : 오포자이 디 오브 견본주택, 경기 광주시 역동 213-3



※ 모든 제출 서류는 [입주자모집공고일 2021.05.20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.]

-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,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(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 포함)하며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.

▶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기본 필수서류

구분	확인사항	대상자
신분증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	본인
주민등록표등본	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	
주민등록표초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 ·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	
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-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)	
가족관계증명서	-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	
혼인관계증명서	-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	
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-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출생연도부터 현재까지로 설정	

▶ 추가 필요서류

구분	확인사항	대상자
주민등록표등본	-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	배우자
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입증서류	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(청약신청자)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(본인만)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본인
부적격 소명서류	-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 등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-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	본인

▶ 가점제 당첨자 추가 필요서류

구분	확인사항	대상자
주민등록표초본	-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	피부양 직계존속
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-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(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'전체포함'으로 발급)	피부양 직계비속
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-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 존·비속이 있는 경우 피부양인 전원 제출 ※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	피부양 직계 존·비속
혼인관계증명서	-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'상세'로 발급	피부양 직계비속
가족관계증명서	-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'상세'로 발급) -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	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

▶ 제 3자 대리인 접수 시 추가구비서류

구분	확인사항	대상자
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- 본인(청약자) 발급 인감 증명서에 한함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 3자 대리신청은 불가)	청약자
신분증, 인장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	대리인

※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'전체포함' 또는 '상세'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구비 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.